

머 리 말

국세청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지금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국의 조세제도와 투자절차 등을 수록한 세무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음에도 현지 세법관련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거나, 향후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남아공, 르완다 5개국에 대한 세무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는 현지 국가 세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으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세무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우리청의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 책자가 해외진출기업 관계자 및 종사 직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박영준

목 차

제 1 장	들어가는 말	1
--------------	---------------	---

제 2 장	국가개황	5
--------------	-------------	---

1.	일반개요	7
2.	아르헨티나 역사(略史)	8
3.	아르헨티나의 경제동향	10
(1)	개요	10
(2)	환율동향	10
(3)	인플레이션 동향	11
(4)	실업률 동향	12
(5)	무역수지 동향	12
(6)	향후 전망	13
4.	아르헨티나의 대외관계	13
5.	우리나라와의 관계	14
(1)	교역현황	15
(2)	투자현황	16

제 3 장	아르헨티나 투자개요	19
--------------	-------------------	----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기본원칙	21
(1)	내국인과 동등대우	21
(2)	적극적 투자유치	21
2.	아르헨티나 투자의 장점	22
(1)	높은 성장률	22
(2)	넓은 소비시장	22

(3)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22
(4) 높은 수준의 노동력	23

제 4 장 아르헨티나 투자절차 25

1. 기업의 종류	27
(1) 개인사업자(AUTONOMO)	27
(2)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 S.A.)	28
(3)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R.L.)	29
(4) 외국기업의 지사	30
2. 법인의 설립절차	30
(1) 상호 중복여부 확인 및 예약	31
(2) 주식회사 설립 신청서 제출	32
(3) 공시	32
(4) 납세자 번호 취득	33
(5) 관할 세무서 등록	33
(6) 영업허가	33
(7) 자본금의 예치	34
3. 지사의 설립절차	34
(1)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34
(2) 설립절차	34
(3)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35

제 5 장 아르헨티나의 조세제도 37

1. 아르헨티나의 조세행정기관	39
2. 아르헨티나의 조세체계	40
(1) 소득세(Income Tax)	40
(2) 개인재산세(Personal Asset Tax)	44
(3) 법인재산세(Minimum Presumptive Income Tax)	46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46
(5) 소비세(Excise Tax)	49

(6) 양도소득세(Real Estate Transfer Tax)	51
(7) 금융거래세 (Taxes on Bank Checking Account Debits and Credits)	51
(8)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51
(9) 거래세(Turnover Tax)	51
(10) 부동산세(Tax on Real Estate)	52
(11) 인지세(Stamp Tax)	52
3. 아르헨티나 조세행정 일반사항	52
(1) 납세자의 종류	52
(2)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 CUIP)의 취득	53
(3) Fiscal Code	53
(4) 신고·납부	53
(5) 불복청구	54
(6) 가산세의 부과	54
(7) 벌금	54
(8) 조세의 부과제척기간	56

제 6 장 투자대상 산업별 특징 및 투자장려제도 57

1. 자동차 산업	59
(1) 개요	59
(2) 투자인센티브	60
2.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	61
(1) 개요	61
(2) 투자인센티브	61
3. 바이오산업	62
(1) 개요	62
(2) 투자 인센티브	63
4. 대체에너지산업	63
(1) 개요	63
(2) 투자인센티브	63

5. 기타 투자장려제도	64
(1) 고정자산 및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장려제도	64
(2) 산업별 투자장려제도	65
(3) 지역별 투자장려제도	65
(4) 교육에 대한 투자장려제도	66
(5) 수출에 대한 투자장려제도	67
6. 아르헨티나 진출시 유의사항	67
(1) 근로자 우선의 제도	67
(2) 불확실한 법인설립기간	68
(3) 스페인어 중심의 사회	68

제 7 장 **맺음말**

■ 참고문헌	73
--------------	----



Argentina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1장 들어가는 말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의 약 28배에 달하는 세계 8위의 국토면적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변 지역의 광활한 초지대를 바탕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한 농업강국이며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 금, 은, 구리, 아연 등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1년 12월 경제위기 발생으로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2003년 이후 매년 평균 8%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196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경제관계에 있어서는 2005년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교역량이 14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불과 4년 사이에 2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르헨티나 직접투자는 아르헨티나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난 이후 2006년 385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23만 달러를 기록하여 급속도로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산업,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 대체에너지 산업 등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Mercosur(남미 공동시장) 및 Unasur(남미국가연합)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투자는 주변국으로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의 조세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아르헨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Argentina

제 2 장 국가개황

1. 일반개요
2. 아르헨티나 역사(略史)
3. 아르헨티나의 경제동향
4. 아르헨티나의 대외관계
5. 우리나라와의 관계

제 2 장 국가개황

1. 일반개요

분야	개요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명 : 아르헨티나 공화국 (República Argent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문 국명 : Argentine Republic - 23개주 및 1개 직할시로 구성 ○ 수 도(Capital Federal) : 부에노스아이레스 (305만명) ○ 인 구 : 4,048만명('08년 추정치) ○ 면 적 : 2,791,810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약12.5배, 남한의 약28배 크기 - 전국토의 61%가 비옥한 경작 가능지인 평원(Pampa)으로 구성 ○ 기 후 : 북부-아열대, 중부-온대, 남부-한대(남극), ○ 종 교 : 카톨릭(92%), 기독교(2%), 유태교(2%), 기타(4%) ○ 독 립 일 : 1816. 7. 9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 ○ 의 회 : 양원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 72명 (임기 6년) - 하원 : 254명(임기 4년)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 : GDP 3,284억불(08년), 1인당 GDP 8,315불 (08년) ○ 무역수지 : 132억불 흑자 ('08년) ○ 외환보유고 : 464억불 ('08년) ○ 화폐단위 : Peso ○ 환율 : USD 1 = 3.75 Pesos ('09,5월)

2. 아르헨티나 역사(略史)

아르헨티나는 1516년 스페인 항해사 Juan de Solis에 의해 발견된 후, 1580년부터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하였다. 스페인 식민지화 이후 페루 총독의 지배를 받아 페루와 인접한 북서쪽 지역이 중심부로서 번영하였으나, 1776년 아르헨티나 총독 임명 후 동북쪽에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유럽산 수입품의 유입 항구로서 번영하기 시작하였다.

1810년 5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의 부왕체제가 붕괴(5월 혁명)된 후, 1816년 7월 푸꾸만주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리오 데 라 플라타 연합주(Las Provincias Unidas del Rio de la Plata)를 결성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독립 영웅인 Jose de San Martin 장군은 칠레와 페루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시켰다.

독립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하는 전 지역의 합병을 주장하는 중앙집권 주의자와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간 대립이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었다. 1853년 5월 연방헌법(대통령제 및 양원제)을 제정하여 Urquiza 장군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하는 최초의 단일연합국 탄생은 1861년 10월 Mitre장군의 취임으로 실현되었다.

1943년 군사쿠데타 이후, 부통령 겸 노동장관인 Juan Domingo Peron은 노조우대 등 내셔널리즘적 대중주의(일명 Peronism) 정책을 추진하면서 1946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1955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스페인으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1974년 9월 부인 Maria Estela Martinez와 함께 정·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집권하였다. 1975년 7월에는 Peron의 사망으로 부인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1976년 3월 쿠데타로 집권한 Videla 장군은 정치탄압을 하였으나, 1982년 4월 말비나스 전쟁에서의 패배로 군사정부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1983년 12월 라디칼당(UCR)의 Raul Ricardo Alfonsin대통령이 취임하였으나, 超인플레이션(1989년 4,900%)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1989년 7월에는 정의당

(PJ, 일명 Peron당)의 Carlos Saul Menem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되었다 (1995년 5월 재선). Carlos 대통령은 태환정책실시(1991년 4월) 및 시장개방조치 등을 단행하며 경제회복에 힘썼다.

1999년 12월 10일에는 라디칼당(UCR)과 Frepaso당의 연합야당(Alianza) 후보인 Fernando de la Rúa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지만, De la Rúa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정책 일환으로 실시된 예금인출 제한조치에 반대하는 과격한 민중시위에 의해 2001년 12월 De la Rúa 대통령은 하야하고 말았다.

그 후 Ramon Puerta 상원 의장이 48시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의회에서 산루이스 주지사 Rodriguez Saá를 임시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나, 집권 당내 정책 불협화음으로 Saá 대통령은 사임하였고, 2001년 12월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는 De la Rúa 대통령의 잔여임기 동안의 임시대통령으로 Eduardo Duhalde 상원의원을 선출하였다.

Duhalde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절박한 경제난 타개를 위해 IMF와의 구제 금융협상과 정치안정에 주력하였으나, 경제위기 대처 실패와 빈번한 대규모 시위에 따른 정국 및 사회불안을 수습하기 위해 2002년 7월 조기대선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3년 4월 실시된 대선에서 前대통령이었던 Memem 후보가 24.3% 지지율로 1위, Duhalde 대통령이 지원한 중도좌파 성향의 Kirchner 후보가 22%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였으나, 결선투표를 앞두고 여론의 강한 反Memem 정서에 밀려 Memem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결선투표 없이 Kirchner후보가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었으며, 5월 취임함으로써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2007년 12월 18일 실시된 대선에서는 Kirchner대통령의 부인인 Cristina Kirchner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비상경제법을 유지하며 행정부 중심의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3. 아르헨티나의 경제동향

(1) 개요

2001년 말 경제위기 발생 이후, 2002년 한 해 동안 GDP 10.9% 감소, 41%의 인플레이션, 17%의 실업률, 인구절반의 빈곤층화 가속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었다. 하지만, 2002년 하반기 이후부터 환율이 안정되면서부터 2003년에 들어 국내총생산 및 각종 산업지표가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그동안 주재국 경제회생의 관건으로 인식되어 왔던 IMF와의 중기지원 협상을 타결하여 3년간 차관상환을 유예 받는 등 일련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2003년에 7.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기대 밖의 경제 성장 및 안정화를 이룩하였다. 아르헨티나 경제는 높은 1차 상품가격, 낮은 이자율 수준, 전 세계적 경기 호황에 따른 국제 교역 증대 등 유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2003년 이후 연 7-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농업계와 정부 간의 대립 심화, 연금 국유화, 부적절한 환율 정책 등 국내 경제정책상의 문제와 곡물 가격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추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 환율동향

2002년 1월 7일 Duhalde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태환제를 폐지하고 페소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페소화의 대미 달러화 환율이 1:1에서 같은 해 6월말에는 1:3.9까지 치솟은 바 있으나, 2002년 7월 이후 2002년 연말까지 1:3.5~3.6의 다소 안정되었다. 2002년 연말 이후부터는 달러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대로 달러공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003년에는 환율이 1:2.8~2.9선으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02년 12월 이후 환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주재국 정부는 당초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각종 외환규제를 완화하였다. 당시 경제부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외화획득 및 수출세

징수 등으로 재정확충은 가능해졌지만 환율의 지나친 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였으나, 달러화 채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지속적인 환율 하락을 기대하고 있었다. 대미달러 대비 페소화 환율은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3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 10월 이후 전 세계적 금융위기, 아르헨티나 국내경제 상황의 악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 2009.5월 현재 1:3.7 수준까지 이르렀다.

<표-1> 아르헨티나 환율 변동 상황

(단위 : 달러당)

연 도	2005	2006	2007	2008
페 소	3.03	3.06	3.15	3.45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3) 인플레이션 동향

2002년 4월 인플레이션은 10.4%로 공식 집계되어, 최근 10년내 처음으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였다. 2002년 7월 이후 경기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연초 예상과는 달리 2002년 12월말까지 인플레이션 누계는 40.9%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2년 하반기 이래 지속되어온 경제 안정화에 따라 2003년도 인플레이션은 당초 목표치인 22% 보다 크게 감소하여 3.7%의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경제안정세가 견고해 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이에도 6-12% 수준의 비교적 안정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007년 1월 이후 정부 발표 수치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완화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도 물가상승률은 7.2%이나, 아르헨티나 민간경제컨설팅 회사인 Ecolatina에 의하면 2008년도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23.5%에 이르고 있다.

〈표-2〉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물가상승률	12.3	9.8	8.5	7.2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4) 실업률 동향

2003년부터 2008년간에는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2009년도 실업률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표-3〉 아르헨티나 실업률 추이

(단위 :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실업률	11.6	10.2	8.5	7.3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5) 무역수지 동향

아르헨티나는 1992년부터 8년간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부터 흑자로 반전, 2001년에는 6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2002년에는 16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2002년의 큰 폭의 무역흑자는 폐소화 평가절하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대금 부담 증가 및 정부의 강력한 외환통제로 인한 수입자금(외화) 마련 곤란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와 기업들이 생존차원에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생산원가 수준으로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기타 곡물 및 원유 등의 국제적인 수출가 상승도 무역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무역

흑자 기조는 아래의 <표-1>과 같이 지속되었으며 2009년에도 수출 감소 규모보다 수입 감소 규모가 더 커서 무역 수지는 전년대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4> 아르헨티나 무역수지 동향

(단위 : US\$백만, %)

연 도	2005	2006	2007	2008
수 출	40,352	46,456	55,779	70,558
수 입	28,689	34,151	44,707	57,413
무역수지	11,663	12,306	11,072	13,175

<자료원 : 아르헨티나 통계청>

(6) 향후 전망

2003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유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안정세를 유지했던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1차 상품의 국제가격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와 민간연금 국유화, 수입규제 강화 등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IMF가 발간하는 World Economic Outlook(2009년 4월)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2009년도 GDP 성장률은 -1.5%, 2010년도 성장률은 0.7%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아르헨티나의 대외관계

그러나 1982년 영국과의 Malvinas 전쟁 이후 미주대륙 내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정립에도 관심을 갖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으며, 1995년 1월 1일 발족한 남미 4개국 공동시장(Mercosur) 설립을 선도하는 등 역내 협력 주도 국가로 부상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이념에 입각하여 역내 좌파 성향 정권이 대거 등장하자

이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Chavez와 볼리비아의 Morales 대통령과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적 원조를 주고받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으며 EU 국가들과도 큰 외교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는 Gulf전 참전, 크로아티아 파병 등 유엔의 PKO 활동 참여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1993년에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피선되었으며, 1995년 2월 NPT에 가입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아시아 지역을 대미, 대유럽 외교에 버금가는 대상지역으로 비중을 두기 시작했으며,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아시아 경제의 잠재력 및 거대 수요시장에 주목, 아시아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관련해서는 브라질과 공조하여 남미국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립하여 대처하고 있다.

5.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1962년 2월 외교관계 수립 이후,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UN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1995년 9월 Carlos Menem 대통령의 한국방문 및 1996년 9월 김영삼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으로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등 주요인사 교류가 확대 되었으며, 1968년 8월 8일 문화협정 체결 등 각종 협정 체결 및 양자 협의체 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21세기는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미 구축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 교역현황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교역량은 2003년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제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2008년에는 양국 간 교역량이 14억 달러를 초과하였으며 2009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7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5〉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연도별 수출입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수 출	309	331	489	578
수 입	372	556	732	91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에서 아르헨티나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화학제품, 섬유, 전기기기, 기계류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동광, 대두유, 낙농제품, 유지, 가죽 등 주로 1차 산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6〉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품목명	수출		순위	품목명	수입	
		2006	2007			2006	2007
1	자동차	33	77	1	식물성물질(유지)	258	323
2	합성수지	49	72	2	동광	188	281
3	영상기기	53	35	3	가죽	24	3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2)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투자 누계액은 2008년말 현재 1억 5,704달러로서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직접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표-7〉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직접투자규모

(단위 : 천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한국 → 아르헨티나	3,854	4,129	7,238
아르헨티나 → 한국	373	55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의 對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도소매업의 투자가 가장 많으며 그 뒤로는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업자원에 대한 투자 및 농림어업에 대한 투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표-8〉 한국의 對아르헨티나 업종별 투자현황¹⁾

(단위 : 천불)

업 종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농림어업	56	21	54,955	29,434
광 업	32	9	198,317	53,903
제 조 업	30	16	93,691	12,693
건 설 업	2	1	3,900	1,805
도소매업	7	4	77,500	61,625
부동산업	2	1	1,010	255
사업서비스업	5	2	232	232
합 계	134	54	429,605	159,94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1) 1962 - 2009년 3월 기준



Argentina

제 3 장 아르헨티나 투자개요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기본원칙
2. 아르헨티나 투자의 장점

제 3 장 아르헨티나 투자개요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기본원칙

(1) 내국인과 동등대우

아르헨티나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 따라서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며 또한 내국인을 제한하는 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르헨티나 헌법 제20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외국인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있으며, 부동산을 매매·소유할 수 있으며, 하천을 운항할 수 있고,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아르헨티나 법에 따라 결혼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귀화를 강요당하지 않으며 내국인이 납부하지 않는 특별한 세금을 납부할 것을 강요당하지도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3년에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 제1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차별하지 않음을 법제화하고 있다.

(2) 적극적 투자유치

2001년 아르헨티나는 외국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서 법령 396호를 제정하여 모든 아르헨티나 기업의 지분 참여 또는 인수 합병의 제한을 철폐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의 아르헨티나 투자와 관련된 모든 장벽이 제거 되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핵에너지, 방위, 방송 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었다.

2006년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청(ProsperAr)을 설립하여 내외국인의 투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 아르헨티나 투자의 장점

(1) 높은 성장률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08년에도 GDP가 7%성장하는 등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 동안 평균 8.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10.7%)과 인도(8.4%)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성장률에 힘입어 2003년 이후 38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2008년 실업률이 7.9%까지 떨어져 최근 15년 내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2) 넓은 소비시장

아르헨티나의 인구는 약 4천만 명이지만,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는 기업은 아르헨티나 인구의 구매력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5년 1월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 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이며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가 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Unasur(남미국가연합)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Unasur는 Mercosur와 CAN(안데스공동체)의 회원국과 칠레, 가이아나, 수리남이 참가하여 총 12개국이 참여한 경제공동체이다. Unasur회원국의 국내 총생산규모는 약 2조 달러이며 총인구가 약 4억명에 이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진출 시에는 남미 전체를 목표시장으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풍부하고 다양한 자원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세계에서는 8번째로 큰 나라이다. 280만km²에 이르는 국토에는 3,200만ha의 비옥한 경작지가 있으며

개발되지 않은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안데스 산맥의 4,500km²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금, 구리, 납, 아연이 많이 생산된다. 그리고 4,700km²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에서는 풍부한 어업자원이 있다.

(4) 높은 수준의 노동력

아르헨티나의 국민은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한다. 아르헨티나의 교육수준은 남미국가들 중 최고수준이며, UNESCO에서 2007년에 발간된 「세계교육자료 (Global Education Database)」에 따르면 이탈리아,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구 1백만 명당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비율도 주변국인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보다 높다.



Argentina

제 4 장 아르헨티나 투자절차

1. 기업의 종류
2. 법인의 설립절차
3. 지사의 설립절차

제4장 아르헨티나 투자절차

1. 기업의 종류

아르헨티나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종류는 개인사업자, 유한회사, 주식회사, 외국기업 지사 등이 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종류는 통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기업 지사이다.

(1) 개인사업자(AUTONOMO)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단하고 비용의 부담이 없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가) 신청조건

아르헨티나 법이 인정하는 만21세 이상의 성년이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업비자를 통한 단기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신청장소

아르헨티나 국세청 또는 각 지방의 세무서

(다) 신청방법

- ①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거주지확인증²⁾을 발급
- ② 거주지확인증 과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③ 사업자등록 후 납세자번호³⁾(CUIT)를 발급

2) Certificado de Domicilio

3) Clave Unicade Identidad Tributaria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발급 받고 난 후에는 관할시청에 영업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 S.A.)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의 회사법에 명시되어 있다. 설립은 연방정부 산하 기관인 기업청(Inspección General de Justicia : IGJ)에 등기한 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은 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세자 번호(CUIT)를 발급받으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가) 설립요건

- ① 최소 2인 이상의 주주⁴⁾
- ② 최소자본금 12,000페소⁵⁾
- ③ 상호예약신청
- ④ 정관작성⁶⁾
- ⑤ 관보에 법인설립 공고문 게시
- ⑥ 대표이사는 반드시 시민권자이거나 외국인일 경우 영주권이 있어야 함.

(나) 설립비용

주식회사 설립 시 기업청(IGJ)에 상호예약신청비용, 설립신청비용, 설립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관보게시비용, 은행수수료, 정관작성 및 감정 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변호사 또는 회계사들이 법인 설립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에는 수입업무에 따라 수입료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업무 범위 및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정확히 협의하여야 한다.

4) 형식적으로만 2인 이상의 주주를 갖추는 경우 기업청(IGJ)의 인가를 받을 수 없다.

5) 수권자본의 25%는 설립시 아르헨티나 국립은행에 예치하여 한다.

6) 변호사 또는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한다.

(다) 설립기간

아르헨티나에서는 제도 미비 등으로 행정수속기간이 불확실하여 설립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라) 이사회

이사는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자본금이 1천만페소를 넘을 경우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국인도 이사가 될 수 있으나 과반수의 이사는 아르헨티나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마) 감사

주식회사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와 내부 회계감사를 받는다. 회사 내의 감사실은 임원선정 및 통제, 외부회계사 임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유한회사(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S.R.L.)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서 중소기업을 운영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업형태이다. 회사명 뒤에는 유한회사를 의미하는 S.R.L.을 붙여서 표기한다. 유한회사의 독특한 점은 2명이상 50명 이하의 회원(주주)들로 참여 한도가 정해져 있고 회사의 자본금은 각 회원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며 회원은 임의로 같은 회원이 아닌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가 없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이며 회사의 경영은 대표가 맡는다. 대표는 유한회사의 사원일 수도 있고 외부인일 수도 있으며, 1인이 될 수도 있고 다수인이 될 수도 있다.

기업의 모든 결정은 사원총회에서 직접 내려지고 그 즉시 대표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활동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주주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회사 발전(상장의 가능성)을 도모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단점도 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하다.

(4) 외국기업의 지사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아르헨티나 내에 영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사 등록이 필요하다. 등록시 본사 법인명을 사용하거나 제3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은 법인 대표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본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지사는 아르헨티나 회사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회계장부도 본사와 별도로 작성하여 필요시 세무당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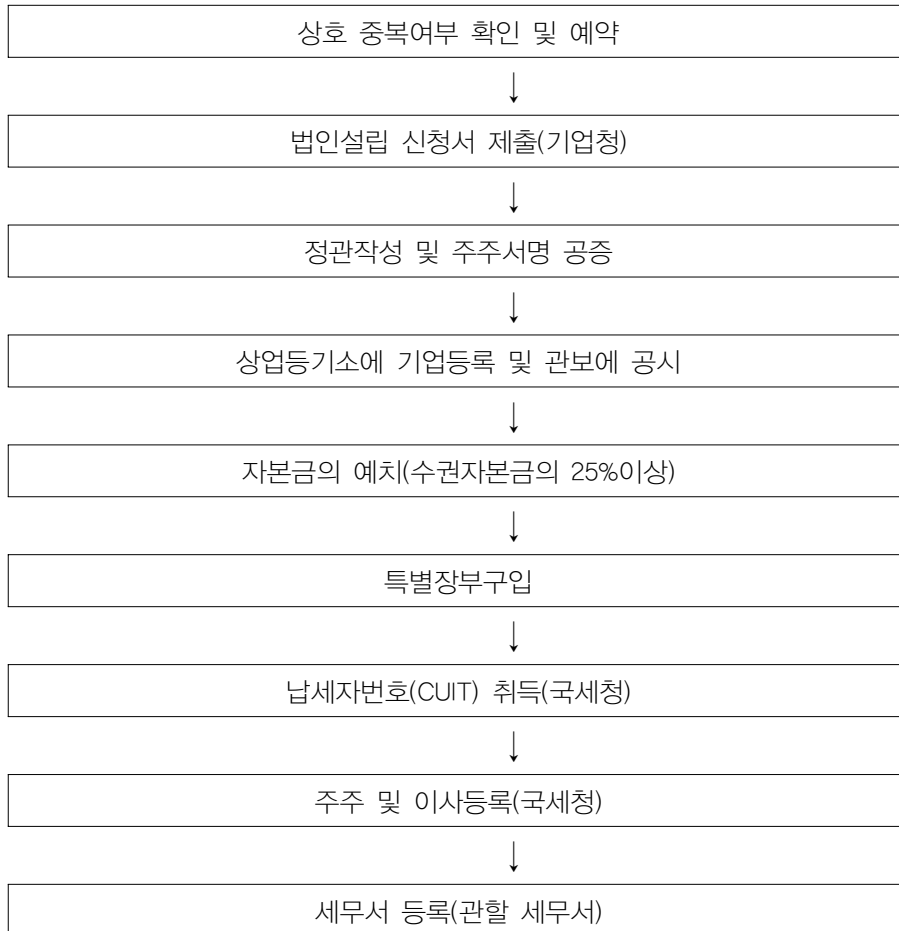
지사는 별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은 본사에 있다. 그러나 본사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사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사 운영에 필요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업행위, 즉 구매 및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현지 활동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본사 파견자의 주재국 소속이 불분명하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비자가 없는 경우 현지 신분증(DNI)을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주택임차, 계좌개설, 차량구입, 휴대전화 개설 등 현지 체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진다.

2. 법인의 설립절차

아르헨티나에서의 법인설립 절차를 그림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그 설립절차가 유사하므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그 설립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법인의 설립절차〉



(1) 상호 중복여부 확인 및 예약

법인설립의 첫 단계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할 상호 예약이다. 아르헨티나의 기업청(IGJ)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호와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로 사용할 명칭을 예약하는 것이다. 상호예약의 유효기간은 등록 후 30일까지이다.

상호를 선택할 때에는 기존의 회사와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국가를 의미하는 NACIONAL과 같은 명칭을 포함할

수도 없다. 그리고 상호에는 주식회사임을 상징하는 SOCIEDAD ANONIMA(S.A.)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 설립 신청서 제출

법인설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청에 제출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현지어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설립 신청서
- ② 주식회사 설립시 최초 회의록 원본 및 사본 2부.7)
- ③ 경영진 개인 정보와 임원수락서
- ④ 주식회사 설립 수수료 영수증
- ⑤ 자본금 예치 증명서
- ⑥ 상호 예약 신청서
- ⑦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의견서

(3) 공시

주식회사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상호
- ② 기업소재지
- ③ 기업의 목적
- ④ 사업연도
- ⑤ 자본금
- ⑥ 이사회, 감사회의 구성내역과 그 구성원들의 이름, 임기
- ⑦ 법적 대표자
- ⑧ 결산일

7) 사본 1부는 공증을 받은 것

(4) 납세자 번호 취득

법인 등록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아르헨티나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를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 ① 정관 사본
- ② 기업청 등록 증명서 사본
- ③ 주식회사 설립 회의록 사본
- ④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및 서명
- ⑤ 법인등록신청서
- ⑥ 자산 소유 증명서 사본

(5) 관할 세무서 등록

아르헨티나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자 번호를 취득한 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법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① 등록신청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 ② 등록자 신분증 사본 1부
- ③ 납세자 번호 원본 및 사본 1부
- ④ 정관 원본 및 사본 1부
- ⑤ 법인 소재지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⁸⁾

등록절차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경우 모든 서류에 대표이사, 주주 또는 법정 대표자의 서명이 부기되어야 한다.

(6) 영업허가

기업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소재 지역 시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는 업종별로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환경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8) 경찰, 등기소 발급 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

(7) 자본금의 예치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청에 법인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기 자본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12,000페소이며 초기 자본금은 정관에 명시된 수권자본의 25%이상이다. 예치은행은 국책은행인 Banco de la Nacion Argentina이며 자본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지사의 설립절차

지사 설립 시 아르헨티나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본사의 건전성이다. 본사가 법정관리 상태인지 영업활동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모기업의 건전성은 관련 서류에 대한 공증 및 영사확인 등을 통해 검증한다.

(1)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① 본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 ② 본사의 이사회 결의록⁹⁾
- ③ 아르헨티나 영업망 정보
- ④ 지사의 자본금(해당할 경우)
- ⑤ 결산일
- ⑥ 본사의 재무건전성 입증자료¹⁰⁾

(2) 설립절차

- ①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위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받음
- ② 위 서류를 아르헨티나 공식 번역사를 통해 번역
- ③ 아르헨티나 기업청에 설립신청서류제출

9) 아르헨티나에 지사를 설립 결의 및 대표자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0) 본사가 해산 절차에 있지 않으며 자산의 운용 및 사업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이어야 하며 변호사 또는 공증인의 공증이 포함되어야 함.

- ④ 아르헨티나 기업청의 지사 설립 승인(3~6개월 소요)
- ⑤ 아르헨티나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및 납세자번호(CUIT)취득

(3)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가) 은행에서 지사 계좌개설

지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본사 명의로 미화 및 현지화 당좌계좌를 개설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영업 시 통상 1,000페소 이상의 비용은 수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수표를 발급할 수 있는 당좌계좌의 개설이 필요하다.

(나) 비자

지사 설립등기 및 납세자번호(CUIT)를 취득한 후에는 한국에 귀국하여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영사와의 면담을 통해 비자를 신청한다. 지사 대표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의 입국허가서 없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 대표가 아닌 주재원은 입국 허가서를 사전에 받아서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Argentina

제 5 장 아르헨티나의 조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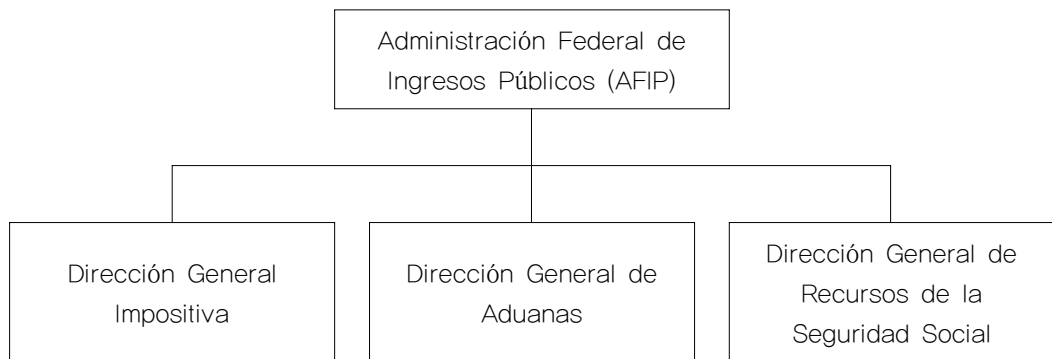
1. 아르헨티나의 조세행정기관
2. 아르헨티나의 조세체계
3. 아르헨티나 조세행정 일반사항

제5장 아르헨티나의 조세제도

1. 아르헨티나의 조세행정기관

아르헨티나의 최고 조세행정기관은 1997년에 설립된 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약칭 AFIP)이다. AFIP는 내국세와 관세, 사회보장세를 모두 관장하는 기관으로 그 산하에는 각각 내국세, 관세, 사회보장세를 관할하는 3개의 기관이 있다.

〈아르헨티나 국세청 조직도〉



기 관 명	담 당 업 무
Dirección General Impositiva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
Dirección General de Aduanas	수출세와 수입세 등 관세를 부과 징수하고 국제 거래를 관장하는 기관
Dirección General de Recursos de la Seguridad Social	사회보장세를 부과 징수하는 기관 (노동국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과 업무 협조를 함)

2. 아르헨티나의 조세체계

아르헨티나의 조세는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주정부세 및 시정부에서 부과하는 시정부세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소득세(Income Tax), 개인재산세(Personal Asset Tax), 법인재산세(Minimum Presumptive Incom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소비세(Excise Tax), 양도소득세(Real Estate Transfer Tax), 금융거래세(Taxes on Bank Checking Account Debits and Credits) 등이 있다.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거래세(Turnover Tax), 부동산세(Tax on Real Estate), 인지세(Stamp Tax) 등이 있다.

시정부에서는 각종 부담금 등을 부과한다.

(1) 소득세(Income Tax)

아르헨티나의 세법은 하나의 소득세법 규정을 개인과 법인에게 모두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인은 비례세율, 개인은 누진세율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¹¹⁾

(가)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1) 기본사항

- ① 납세의무자 :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법인의 지사 및 고정사업장 등
- ② 신고시기 :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¹²⁾

11) 거주자의 판정기준은 아르헨티나에 12개월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거주기간 판정 시 90일이하의 해외체류기간은 거주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12) 납부는 매달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예납이 이루어지며 신고시기에 정산금액이 결정된다.

- ③ 신고방법 : 아르헨티나 국세청에 세무조정이 완료된 신고서 및 재무제표 제출
- ④ 사업연도 : 사업연도는 통상적으로 역년에 따라 1월부터 12월까지이다.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 연도를 정할 수 있다.

2) 공제항목

소득세 산출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 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걸쳐서 발생한 비용 및 면세소득 및 과세 소득에 걸쳐서 발생한 비용은 각 소득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비용처리 하여야 한다.
- ③ 외국에서 발생한 비용은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하여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국외관계회사들 간의 거래는 그 거래의 계약조건이 정상적 거래(Arm's Length Principle)라면 제3자간의 거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정상적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그 거래는 이전가격제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원천징수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원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과세소득으로 본다.¹³⁾

13) 소득률은 실제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표-9〉 비거주자의 소득별 소득률

소득의 종류	소득률
아르헨티나 금융기관에 금전, 신용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	43%
소득세법 49조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금전, 신용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	100%
기술자, 예술가, 운동선수 등이 일시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받은 급료, 보수 등	70%
아르헨티나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저작권	35%
기술지도 또는 컨설팅에 대한 로열티	60% ~ 80%
자산의 처분소득	50%
동산의 임대소득	40%
부동산의 임대소득	60%
그 외의 소득	90%

(출처 : 아르헨티나국세청(www.afip.gov.ar), '09. 5월 현재)

4) 결손금의 처리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하며, 국외원천손실은 국외원천이익으로만 공제 가능하다.

5) 회계처리

아르헨티나의 소득세법은 납세자가 어떤 특정한 장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감사보고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아르헨티나 상법은 몇 종류의 회계장부를 명시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이러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부는 페이지 순서대로 정리되고 거래를 시간의 순서대로 기재하여 상업등기소의 공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본사와 별도로 회계기록을 하고 세무조정을 행하여 아르헨티나 국내원천소득을 계상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본사와 지사를 단일납세자로 간주하고 소득세를 계상하여 과세한다.

6) 세율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35%이다.

(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소득세법상 개인의 소득세율 구성하는 요소는 4가지로 분류된다. 부동산소득, 자본소득, 사업소득, 개인용역소득의 4가지가 그것이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구분기재를 하게 되어 있으며 각종 공제항목이 적용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1) 부동산 소득

부동산의 임대소득 등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

2) 자본소득

증권, 채권, 로열티, 배당금 등 자본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

3) 사업소득

개인사업 등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

4) 개인용역소득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 연금소득 등 개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

고용주에게서 받은 소득은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고용인의 과세대상소득, 원천징수세액, 비과세소득,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의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매년 1회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세액납부

아르헨티나에서 소득세는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에 걸쳐 예납이 이루어진다. 예납의 경우에도 공제제도는 있으며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 금액에서 20%가 적용된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전자이체로 납부할 수도 있다. 확정신고는 귀속연도의 다음해 4월까지이다.

6) 세율

아르헨티나의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10〉 개인 소득세율표

(단위 : 페소, %)

소 득 금 액	세 율	누진공제액
10,000이하	9	0
10,000초과 - 20,000이하	14	900
20,000초과 - 30,000이하	19	2,300
30,000초과 - 60,000이하	23	4,200
60,000초과 - 90,000이하	27	11,100
90,000초과 - 120,000이하	31	19,200
120,000초과	35	28,500

(출처 : 아르헨티나국세청(www.afip.gov.ar), '09. 5월 현재)

(2) 개인재산세(Personal Asset Tax)

(가) 과세대상자

- 거주자 :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과
- 비거주자 : 국내 재산에 대하여만 부과

(나) 과세기준일

매년 말 소유권을 기준으로 함.

(다) 과세대상물건

부동산, 저당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기된 개인재산, 예금, 증권, 대여금, 등

(라) 비과세물건

- 무형자산(영업권, 특허권, Trade Mark 등 이와 유사한 것)
- 법인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중앙정부·지방정부 등이 발행한 채권

(마) 과세기준금액

개인재산세는 재산가액이 305,000페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그 이하의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은 개인재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표-11〉 개인재산세율표

(단위 : 페소, %)

재 산 가 액	세 율
305,000 초과 - 750,000 이하	0.50%
750,000 초과 - 2,000,000 이하	0.75%
2,000,000 초과 - 5,000,000 이하	1.00%
5,000,000 초과	1.25%

(출처 : 아르헨티나국세청(www.afip.gov.ar), '09. 5월 현재)

(3) 법인재산세(Minimum Presumptive Income Tax)

(가) 과세대상자

법인사업자, 1인 기업, 농촌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 신탁, 투자신탁, 고정사업장 등

(나) 과세대상

과세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

(다) 세율

법인재산세의 세율은 1%이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가 법인재산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재산세는 납부가 면제된다.

(4)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가)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제공, 재화의 수입, 해외에서 용역의 공급¹⁴⁾에 대하여 과세된다.

(나) 과세대상자

-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
-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상행위를 하는 자
- 자신의 명의로 수입을 하는 자
- 자신의 명의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수입을 하는 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를 하는 자

14) 용역공급의 효과가 국내에서 일어나며 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사업자인 경우

(다) 면세재화

서적, 광고전단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물, 생수, 빵, 우유, 의약품, 우편물에 사용되는 우표, 인지, 복권, 인가를 받은 겜블링(Gambling), 국방용·상업용 비행기, 정부에서 발주하는 선박 등

(라) 면세용역

-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용역
- 공공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사설교육기관이 학교(대학교 포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문화용역
- 의료보건용역
- 환자수송을 위해 특수제작 된 자동차의 수송용역
- 연극·영화·뮤지컬·스포츠 경기의 티켓, 영화의 제작과 배급
- 운행거리 100km이하의 여객수송용역(택시, 버스 등)
- 국제운송
- 토지임대

(마) 면세수입

- 관광객, 과학자, 기술자, 외교관을 위해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 소득세가 면제되는 종교단체 등에서 수입하는 재화 중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견본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재화의 수입
-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용역이 외국에서 일어날 때

(바) 면세수출

재화와 용역의 수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더라도 그 효과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용역은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 세율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은 21%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품들에는 할증세율 또는 할인세율이 적용된다.

〈표-12〉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구분	세율	대상
할증률	27%	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통신용역, 휴가목적의 부동산 임대용역
할인율	10.5%	주택공사용역, 가축의 판매와 수입, 정육, 과일, 콩, 채소,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 금융기관이 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이자

(출처 : 아르헨티나국세청(www.afip.gov.ar), '09. 5월 현재)

(아) 과세표준

- 상품 : 순상품가격과 그에 부수되는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¹⁵⁾
- 용역 : 용역의 제공에 따라 지불되는 대가
- 수입 : 관세의 과세표준에 관세와 기타공과금·세금 등이 포함된 금액¹⁶⁾

(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시기

- 과세기간 : 매월
- 신고시기 : 매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전월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차) 수출에 대한 환급제도

수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와 수출과 관련 있는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도 더 공제할 수 있는 매입

15) 제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16)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이 남아 있다면 다른 종류의 국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세금에서 공제를 하고도 매입세액이 남아있다면 그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소비세(Excise Tax)

(가) 과세대상물품

담배, 알코올음료, 맥주, 음료수(soft drinks), 시럽, 주정, 자동차, 디젤엔진, 이동통신서비스, 샴페인, 사치품, 레저용 선박 및 비행기 등

(나) 과세시기

- 상품 판매의 경우 : 소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되는 때
- 수입의 경우 : 수입하는 때
- 알코올음료의 경우 : 제조자·수입자가 상품을 반출하는 때

(다) 과세표준

- 순판매가격¹⁷⁾
- 담배의 경우에는 최종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 수입의 경우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표준에 여타세금을 포함한 금액의 130%가 된다.

(라) 세율

소비세의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품목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7) 매출할인이 있는 경우 매출할인 된 금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표-13〉 품목별 소비세율표

품 목	세 율	비 고
담배	60%	
술	12% - 30%	종류에 따라 다름
삼페인	12%	
맥주	8%	
음료, 시럽, 주정	8%	
자동차와 디젤엔진	10%	
사치품	20%	
선박, 비행기	4% - 8%	가격에 따라 다름

(출처 : 아르헨티나국세청(www.afip.gov.ar), '09. 5월 현재)

(마) 납부시기

소비세는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바) 수출물품 등에 대한 소비세 환급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이 수출되거나 외국항행 선박 또는 비행기에 공급되는 경우 납부한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사) 보험에 부과되는 소비세

보험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르헨티나 국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8.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2.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외국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관련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제외), 재산보험, 부동산보험, 가축보험에는 23%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보험에 부과되는 소비세는 보험료 납부일에 납부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서

사본은 아르헨티나 국세청(Dirección General Impositiva)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보험, 생명보험, 병원비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은 소비세가 면제된다.

(아) 휴대통신에 대한 소비세

휴대전화와 위성전화 서비스에는 4%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동 서비스를 위해 발행되는 선불카드 및 충전식카드에도 같은 소비세가 부과된다.

(6) 양도소득세(Real Estate Transfer Tax)

아르헨티나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개인은 그 거래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1.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금융거래세(Taxes on Bank Checking Account Debits and Credits)

은행의 당좌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금액의 0.6%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거래세로 납부한 금액의 17%는 소득세와 법인재산세에서 매달 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거래세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8)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세표준은 피고용인이 받는 급여이며, 고용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용인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세율은 피고용인은 급여의 17%이며, 고용인은 중소기업일 경우 23%, 대기업일 경우 27%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고용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는 그 일부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도 있다.

(9) 거래세(Turnover Tax)

거래세는 제조 및 판매과정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전단계 거래에 대한

공제제도는 없으며 1년 기준으로 부과되나 납부는 매월 또는 매2개월 단위로 이루어진다. 세율은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업거래에는 3% - 3.5%, 제조업간 거래에는 1.5%, 1차 상품의 거래에는 1% - 1.5%가 부과된다.

(10) 부동산세(Tax on Real Estate)

지방정부의 관할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에 따라 세율이 다양하다.

(11) 인지세(Stamp Tax)

인지세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간에 계약서 작성 시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1%이며 지방정부에 따라 인지세를 폐지한 곳도 있다.

3. 아르헨티나 조세행정 일반사항

(1) 납세자의 종류

아르헨티나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종류, 방식에 따라 일반유형과 간이유형으로 나누어진다.

(가) 일반유형에 속하는 납세자

일반유형 납세자는 개인, 법인 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인재산세, 법인재산세(추정소득세) 등의 국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이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와 개인사업자(Self-employed workers)는 일반유형에 속하지만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이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나) 간이유형에 속하는 납세자

간이유형 납세자는 법이 정하는 일정액 이하의 소득자로서 사회보장세와 일반세금이 합해서 부과되는 1종류의 세금을 매달 납부한다. 4개월마다 간이유형

납세자는 간이유형에 해당되는지 재분류가 이루어진다.

(2)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 CUIP)의 취득

납세자번호는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를 식별하는 번호이다. 납세자번호 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 주소가 없는 납세자는 대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주소가 아르헨티나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대리인의 아르헨티나 내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납세자 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3) Fiscal Code

아르헨티나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세금신고, 세금납부, 간이유형 납세자의 선택, 폐업신고 등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국세청이 부여하는 Fiscal Code를 부여 받아야 한다.

Fiscal Code에는 보안등급이 수반되는데 보안등급이 높을수록 아르헨티나 국세청이 제공하는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 신고·납부

아르헨티나에서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검증할 권한이 있으며, 만약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거래처에 대하여도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닌 한 수정신고로 그 세액을 감액할 수 없다. 납세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고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무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청이 무신고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을 결정한다. 납세자가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을 추계하여 결정한다.

(5) 불복청구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 또는 추계에 의한 세금의 부과, 또는 벌금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의 고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결정을 통지한 과세관청, 지방법원 또는 연방조세법원에 그 결정의 취소 또는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요청을 제기 할 수 있다.

연방조세법원에는 세금의 예납 및 그 예납세액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불복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본세가 불복청구의 쟁점이 되지 않는 한 그 가산금은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6) 가산세의 부과

세금의 무납부(원천징수 납부, 예정납부, 분납 포함)시에는 사전 통지 없이 납부 기한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7) 벌금

(가) 무신고에 대한 벌금

사전 통지 없이 200페소에서 400페소까지 벌금이 부과(사업의 형태에 따라 벌금의 차이가 있음.)

(나) 의무사항위반에 대한 벌금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법 및 세금과 관련된 명령,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50페소에서 25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 벌금액이 45,000페소까지 늘어날 수 있다.

- 주소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세법·명령·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납세자의 조력의무가 행정절차법상 명시되어 있음에도 세무조사 시 조력을 태만히 하거나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요구하는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영수증, 기타증빙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다) 무납부(과소납부)에 대한 벌금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납부한 경우 그 무신고세액 또는 과소신고세액의 50%에서 10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¹⁸⁾

이와 같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가 아르헨티나 내의 관계회사 간 또는 고정사업장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경우 그 벌금은 4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라) 영업정지

10페소를 초과하는 거래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300페소에서 30,000페소에 이르는 벌금과 함께 3일에서 10일까지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 국세청에 의해 교부의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에 의해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재화와 용역의 구입 및 판매에 대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그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
- 자기소유가 아닌 상품을 국세청이 정한 정당한 서류 없이 운송하는 경우
- 국세청에 등록의무가 있음에도 무등록한 경우

18)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재화나 용역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의 과세목적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생산량 측정장치 등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마)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납세자가 사기, 악의적 은폐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벌금은 포탈한 세금의 2배에서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8) 조세의 부과제척기간

- 등록된 납세자와 등록의무가 없는 납세자 : 5년
- 무등록 납세자 : 10년
- 부당하게 세액공제 환급받은 경우 : 그 공제 환급일의 익년 1월1일부터 5년
- 이중납부 : 5년
- 환급신청권리 : 환급신청가능일의 익년 1월1일부터 5년



Argentina

제 6 장 투자대상 산업별 특징 및 투자장려제도

1. 자동차 산업
2.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
3. 바이오 산업
4. 대체에너지 산업
5. 기타 투자장려제도
6. 아르헨티나 진출시 유의사항

제6장 투자대상 산업별 특징 및 투자장려제도

1. 자동차 산업

(1) 개요

아르헨티나 중공업산업에 있어서 자동차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7년 자동차산업이 아르헨티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였으며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였다. 2002년 이후 자동차 생산 및 수출은 2002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하여 2008년 총 생산량은 597,000대에 이른다.

〈표-14〉 아르헨티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동향

(단위 : 천대)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 산	169	260	319	432	545	597
총판매	155	311	402	460	564	612
내 수	64	108	143	188	234	238
수 출	108	146	181	236	316	351

<자료원 : 아르헨티나 자동차협회>

현재 아르헨티나에 진출하여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는 Fiat, Ford, GM, Iveco, Mercedes Benz, Peugeot-Citroen, Renault, Volkswagen, Scania, Toyota 등의 세계적 자동차 생산업체들이며, 이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내의 자동차부품업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시장 확대, 현지의 숙련된 기술력, 유리한 환율상황 등이 아르헨티나

자동차산업투자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최근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트럭과 오토바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트럭은 2002년 이후 경제성장과 농업생산의 향상으로 그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트럭을 생산하는 기업은 IVECO¹⁹⁾사 1곳뿐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트럭수요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07년 현재 트럭의 수입은 국내생산보다 3.5배나 많은 수준이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 오토바이의 판매량은 2002년 12,000대에서 2007년 680,000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구매력 회복 및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도 그 원인이지만 오토바이가 자동차보다 그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데에도 이런 수요증가의 원인이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아르헨티나의 오토바이 수입증가율은 연평균 128%성장하였으며²⁰⁾, 수입물량의 90%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2) 투자인센티브

(가) 국산부품매입액 일부환급

2008년 6월 제정된 국내자동차부품생산장려법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그 차량가격의 70%이상에 해당되는 부품을 아르헨티나 국내부품으로 생산되었을 경우 1차 사업연도에는 국내부품가격의 8%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차 사업연도에는 7%, 3차 사업연도에는 6%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 엔진 및 트랜스미션 부품매입액 일부환급

엔진생산과 트랜스미션 기어 생산을 위해 사용된 부품에 있어서는 1차 사업연도에 10%를 시작으로 연간 1%씩 감소하여 5차 사업연도에는 6%의 자동차부품 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다.

19) 2007년 IVECO사는 아르헨티나에서 5,100대의 트럭을 생산하였다.

20) 같은기간 오토바이 생산량 증가율은 연평균 121%이다.

2.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

(1) 개요

아르헨티나에서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발전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매년 2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수출은 매년 24%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표-15>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 판매 및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판 매	976	1,162	1,205	1,578	1,862	2,219
수 출	176	226	258	293	385	422

<자료원 :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협회>

아르헨티나에 진출해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는 Google, IBM, Intel, Microsoft, NEC, Oracle등이 있으며 아르헨티나 국내기업만도 1,500개가 넘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산업은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협회가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2011년까지 수출 및 판매가 2008년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수출액 30억 달러, 판매액 80억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투자인센티브

(가) 대상기업

고용인의 50%이상 또는 기업의 인건비용이 50%이상이 소프트웨어 개발활동을 위해 지출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업종인 기업²¹⁾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21) 가정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은 본 투자인센티브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어진다.

(나) 유리한 세법적용

10년 동안 직접국세, 관세, 각종 부담금에 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개정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 사회보장세 감면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가 70%까지 감면되며 감면된 사회보장세는 법인 소득세를 제외한 국세납부로 대체될 수 있다.²²⁾

(라)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수출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소득세의 60%가 감면된다.

(마) 관세 면제

하드웨어 및 IT부품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다.

3. 바이오산업

(1) 개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바이오산업은 연평균 13%의 성장을 하였다. 2008년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2%의 성장을 기록하여 그 시장 규모는 897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50%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몇몇 나라들은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그 중 한 나라이다. 아르헨티나에는 현재 80개가 넘는 바이오산업 관련업체가 있으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29%가 예방접종물,

22) 감면된 사회보장세의 현금환급 및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23%가 종자 및 식물품종개량, 12%가 식품첨가물, 12%가 가축건강물질, 24%가 건강식품에 종사하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허용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고용주의 사회보장세에 대한 공제허용(50%한도)
- 연구개발용역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50%한도)

4. 대체에너지산업

(1) 개요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의 향후 세계시장 전망은 매우 밝다. 화석연료의 고갈,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세계 각국 정부의 에너지 안보문제로 인하여 대체 에너지로서의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은 3배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매년 12%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3,200만ha의 경작지와 높은 농업생산성, 숙련된 인적자원 및 잘 준비된 산업생산능력으로 이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인센티브

- 바이오연료의 의무사용
 - 법률 제26093호에 의거 2010년부터 디젤연료의 5%는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여야 하며, 가솔린연료의 5%는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여야 한다.²³⁾
- 자본재 및 설비투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및 가속상각허용

23) 이 법률은 연간 바이오디젤 수요량 700,000m³ 및 바이오에탄올 수요량 243,000m³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설립 후 3년간 법인재산세 면제
- 수도세 및 연료세 면제
- 바이오디젤 수출관세 20%중 2.5%환급
- 바이오에탄올 수출관세 5%중 4.05%환급

5. 기타 투자장려제도

(1) 고정자산 및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장려제도

(가) 투자촉진법

2008년 4월에 발효되어 2010년 9월까지 유효한 투자촉진법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장려제도가 있다.

- 자본재의 구입 및 투자와 관련된 재료의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수 있다.
- 투자초기연도에 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와 관련된 기계장치는 가속상각이 가능하다.

(나)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자본재, 컴퓨터, 통신기기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일반율인 21%가 아닌 할인율 10.5%를 적용한다.

(다) 자본재와 농업용기계류에 대한 생산과 투자

자본재와 농업용기계류를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를 14%환급 받을 수 있다.

(2) 산업별 투자장려제도

(가) 광업

- 탐사비용에 대해서는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 탐사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2개월 경과 후 환급 가능하다.
- 광업당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는 30년간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기계장비, 건축물, 설비투자는 3년에 걸쳐 가속감가상각 처리한다.
- 기계, 자동차, 시설물은 1/3씩 1차 사업연도부터 상각한다.
- 광업당국에 등록된 업체는 채굴과 관련하여 자본재, 기계장비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이 조항은 광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적용된다.

(나) 임업

- 임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행한 업체는 30년간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간은 20년 더 연장될 수 있다.
- 기계장비, 건축물, 설비투자는 3년에 걸쳐 감가상각 처리한다.
- 기계, 자동차, 시설물은 1/3씩 1차 사업연도부터 상각한다.
- 임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 500ha이하의 임업업체에 대해서는 직접환급이 아닌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있다. 금액의 산정방식은 수종, 지역에 따라 1ha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조된다.

(3) 지역별 투자장려제도

(가) 지방정부별 투자장려제도

공장설립, 기계장치의 구입 등에 대하여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면제, 감면, 철회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산업용지의 임대 등에 있어서도 우대받을 수 있다. 혜택의 종류와 방법은 지방정부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투자에 대하여 사안별로 지방정부의 혜택이 정해진다.

(나)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 FTZ)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공장설비 수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수출상품 제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수입할 때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 자유무역지역을 통하여 수출을 하는 업체는 수출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 등도 값싸게 이용할 수 있어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코르도바주 등 9개 지역에 자유 무역지역이 있다.

(4) 교육에 대한 투자장려제도

(가) 중소기업 교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직원교육비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세액공제는 정부가 발행하는 세액공제증명서²⁴⁾(Tax Credit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이로써 세액납부²⁵⁾를 대신할 수 있다.
-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에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세액공제증명서(Tax Credit Certificate)는 양도가 가능하다.

25) 납부가능세금은 소득세, 법인재산세, 부가가치세, 각종 원천징수 세금 등이다.

(5) 수출에 대한 투자장려제도

(가) 수입관세의 환급

수입된 원자재 또는 제품이 가공되어 제3국으로 수출될 경우 그 원자재 또는 제품에 수입당시 부과되었던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나) 수출을 위한 일시적 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해외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 Factory Customs

이 제도는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물품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가공과정 없이 재수출을 하거나 혹은 국내소비 시 거래가 완료될 때 까지 수입관세의 납부가 연장된다.

(라) In-House Customs

- 물품이 회사의 창고에서 직접적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될 수 있다.
- 관세의 납부는 수입된 물품이 소비되기 위해 창고에서 출고되거나 수출 물품이 출고될 때 납부한다.
-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미리 거래목록을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6. 아르헨티나 진출시 유의사항

(1) 근로자 우선의 제도

아르헨티나는 근로자 보호를 중요시 하는 나라로 법규해석에 있어서도 근로자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인건비가 저렴하여 고용은 용이하지만 기업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비용이 매우 높다.

따라서 근로자 고용 시 사전에 근로자 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2) 불확실한 법인설립기간

아르헨티나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서류의 요구, 제도의 미비, 전산망의 미작동 등으로 예상했던 기간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필요서류의 구비, 관할행정관청의 확인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현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스페인어 중심의 사회

아르헨티나의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며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모든 공문서는 스페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 시에도 스페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지진출을 위해서는 스페인어 구사능력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



Argentina

제 7 장 맺음말

제7장 맺음말

세계경제는 최근 식량자원의 부족, 에너지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개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수요시장의 필요성이 점차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넓고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식량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구매력의 향상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여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제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아르헨티나에 대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가개황, 정치·경제정세, 투자절차 및 조세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조세제도에 있어서는 법인재산세, 금융세 등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세금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에 신규투자 및 설비투자 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세제지원 및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의 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제도를 잘 파악하여 예기치 않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고 문 헌

□ Internet Site

1. 주아르헨티나대사관(www.embcorea.int.ar)
2. 주한아르헨티나대사관(www.argentina.or.kr)
3. 아르헨티나투자진흥청(www.prosperar.gov.ar)
4. 아르헨티나국세청(www.afip.gov.ar)
5.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6. 대한무역진흥공사(www.kotra.or.kr)
7.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8. 외교통상부(www.mofat.go.kr)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10. PKF International(www.pkf.com)
11. 아르헨티나 자동차협회(www.adeffa.com.ar)
12. 아르헨티나 소프트웨어협회(www.cessi.org.com)

□ 참고도서

1. KOTRA, 『아르헨티나 투자실무가이드』, 2008
2. KOTRA, 『중남미 IT시장현황 및 진출방안』, 2007
3. KOTRA, 『이 책 들고 해외출장 가자 중남미편』, 넥서스, 2007
4. KOTRA, 『중남미 비즈니스 문화코드』, 한국외대출판부, 2009
5. 이재기, 『현대중남미 경제론』, 청목출판사, 2007
6. 김홍수·심국웅, 『중남미 개관』, 선문대학교, 2005
7. 송기도, 『콜럼버스에서 플라까지』, 개마고원, 2003
8. 김종년, 『한 달간의 아름다운 도전 중남미편』, 선미디어, 2005
9. 고혜선, 『메스티소의 나라들』, 단국대학교출판부, 2009

10. 홍용표, 『아르헨티나의 폭발적 부흥운동』, 서로사랑, 2001
11. 전해진·김준현, 『핵심 중남미 100배 즐기기』,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
12. 김명수, 『중남미로 진출하자』, 명림, 2002
13. 이미숙·김원호, 『남미가 확 보인다』, 학민사, 2001

본 안내서는 우리기업이 아르헨티나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세법 등을 2009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아르헨티나 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의견을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다음 기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 142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 국제협력담당관 서진욱

행정사무관 장일현

세무조사관 고당훈

부산청 북부산세무서 : 세무조사관 주성민 (051-310-6429)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397-1424)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